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호평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1294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: 김호평, 송아량, 권수정,

김재형, 서윤기, 송정빈, 오현정, 이경선, 이동현, 이병도, 이준형, 정진술,

최 선, 한기영 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「청년기본법」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, 「청년기본 법」의 개정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구체화하여 청 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 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을 「청년기본법」으로 변경함(안 제3조 제1호).
- 나.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 한 방안을 규정함(안 제19조 신설).
- 다. 청년의 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- 라.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(안 제24조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「청년기본법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.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"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"을 "「청년기본법」"으로 한다. 제6조제2항제2호차목 카목으로 하고, 차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청년의 국제협력

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, 제19조, 제22 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청년의 국제협력)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(청년의 날)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 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4조(표창)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했 혂 개 정 아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 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이 조례에서 "청년"의 범위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이하 「청년기본법 - -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.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 른다. 2. ~ 5. (생 략)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6조(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 제6조(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 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 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 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 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 행하여야 한다. 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.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.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.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.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가.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.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나.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.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다.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

향상

향상

- 향상
- 마. 청년의 부채 경감
- 바. 청년의 생활안정
- 사. 청년 문화의 활성화
- 아. 청년의 권리보호
- 자. 청년의 건강증진

<신 설>

차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카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

<신 설>

제19조 ~ 제21조 (생 략)

제22조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라.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라.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
  - 마. 청년의 부채 경감
  - 바. 청년의 생활안정
  - 사. 청년 문화의 활성화
  - 아. 청년의 권리보호
  - 자. 청년의 건강증진
  - 차. 청년의 국제협력
  - 정책 분야
  - 제19조(청년의 국제협력)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 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 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제20조 ~ 제22조 (현행 제19조부 터 제21조까지와 같음)

**제23조** (현행 제22조와 같음)

- 제22조의2(청년의 날) 시장은 청 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•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24조(표창) 시장은 다른 사람에 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

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(청년의 날), 제24조(표창)을 신설함에 따라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비용 및 표창장 제작 비용 발생
  - \* 단,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호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을 「청년기본법」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## 2. 미첚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[제22조의2(청년의 날), 제24조(표창) 해당]
  - 1) 추계결과 ≒ 1.527.580천원
   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.527.580천원으로 연평균 305.516천원임
    - 추계의 전제
      - 제22조의2 청년의 날(행사 및 교육·홍보사업)은 (사)청년과 미래가 개최한 '대한민국 청년의 날'자료를 준용하되, 행사 참가대상 규모를 30,000명으로 전제하여 추계
        - \* (사)청년과 미래의 '대한민국 청년의 날'예산 및 참가대상 규모
          - · 2019년 예산(홍보비 포함) : 508,277천원 (붙임 참고)
          - · 행사 참가대상 규모 : 50,000명
      - 교육 사업은 홍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여 별도의 사업비 발생하지 않음
      - 제24조 표창은 매년 표창 대상을 100건으로 전제하고 표창장 제작비는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제작비(5,500원)를 준용하여 추계
     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   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 나. 기술적 추계 곤란

○ 같은 조례안 제19조(청년의 국제협력)의 신설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 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나, 사업 범 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#### 4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1,527,580천원
  - 총비용 =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·홍보 비용 + 표창장 제작 비용 = 1,524,830천원 + 2,75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	_
	소계(a)	_	_	_	_	_	_
세출	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·홍보비용 (제22조의2)	304,966	304,966	304,966	304,966	304,966	1,524,830
	표창장 제작 비용 (제24조)	550	550	550	550	550	2,750
	소계(b)	305,516	305,516	305,516	305,516	305,516	1,527,580
총비용(b-a)		305,516	305,516	305,516	305,516	305,516	1,527,580

## 가.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·홍보 비용 = $\sum_{i=1}^{5} (연간행사및교육·홍보비용)i$

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- 연간 행사 및 교육·홍보 비용 ≒ 304,966천원
  - · 행사 및 교육·홍보비는 (사)청년과 미래의 '대한민국 청년의 날'행사비(홍보비 포함 508,277 천원)를 준용하되, 참가대상 규모를 50,000명에서 30,000명으로 낮춰서 추계

## 나. 표창장 제작 비용 = $\sum_{i=1}^{5} ($ 연간행사및교육·홍보비용)i

- i =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- 연간 표창장 제작 비용 ≒ 550천원

≒ 표창 대상 건수 × 제작 비용

≒ 100건 × 5,500원

- · 표창 대상 건수는 매년 100건으로 전제
- ·제작 비용은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제작비 준용

## 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**2** 02-2180-7954

e-mail: thdud36@seoul.go.kr

## 붙임

(사)청년과 미래 '대한민국 청년의 날' 2019년 예산 내역

## □ 사업 목적

-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의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
- 3.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, 새롭게 도약하는 場 마련
- 대한민국 대표 자발적 청년 참여형 축제로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행사 개최를 통한 청년 세대 문화 이해의 場 마련

## □ 2019년 예산 내역

대 분 류	세 부 내 역	예 산
'대한민국 청년의 날'행사		508,277천원
시설사용료	장소사용료 및 청소대행업체	8,800천원
시설(부스)	캐노피, 현수막, 구조물 등	41,140천원
시스템	무대, 음향, 조명 등	33,000천원
사전행사	발대식	6,270천원
행사운영	단체복, 명찰, 인건비 등	154,132천원
주요프로그램	플래시몹 등 8개 프로그램	66,385천원
축하공연	축하공연자 섭외	165,000천원
홍보	제작물 및 온라인 광고	33,550천원

<sup>※</sup> 부가가치세 포함